

세계화장실협회 규약

개정 2007.11.22.
개정 2014.02.26.
개정 2016.06.01.
개정 2017.11.22.
개정 2018.11.21.
개정 2022.11.08.
개정 2023.05.23.

전문

화장실은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물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고통 받거나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화장실이 세계 위생문제의 핵심임을 직시하고 화장실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적 의제이며, 국경·인종·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인류가 함께 해결하여야 할 인류의 공통 과제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세계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위생’이라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에서 탈피하여 ‘화장실’이라는 특정한 주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우리는 인류 모두가 적절한 화장실에 접근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적절한 화장실

기술의 개발·보급과 함께 화장실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인식을 바꾸고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보급하는 사회 활동을 한다.

우리는 화장실은 단순한 배설의 공간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강, 휴식 명상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의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UN 등 국제기구와 NGO 등과도 적극 협력한다.

이에 우리는 위 설립취지와 규약에 적극 찬동하고 본 협회가 인류의 위생에 크게 기여하는 기구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세계화장실협회를 결성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협회는 세계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함)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World Toilet Association (이하 ‘WTA’ 로 약칭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질 높은 화장실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인류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실문화 : 배설을 위한 기본시설 및 청결, 삶의 질, 공중보건·위생, 물절약, 환경보호, 인간의 존엄성 등 화장실과 포괄적으로 연관된 문화
2. 수준 높은 화장실 : 화장실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하고 나아가 감각적으로도 즐거울 정도의 시설을 갖춘 화장실
3. 회비 : 정부회원 및 단체회원, 개인회원이 매년 지불해야 하는 확정된 금액(2017.11.22.개정)
4. 분담금 : 협회회원이 매년 지불해야 하는, 각국의 GNP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산정된 금액
5. 내부감사 : 협회의 기능, 활동, 회계를 감사하고, 위법활동을 감시하고 책임성, 투명성, 윤리기준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자
6. 외부감사 : 협회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인회계법인(사) 및 세무법인(사) 으로서 자격을 가진 자 (2022.11.08. 개정)

제4조 (본부 소재지)

협회 본부는 다른 결정이 없는 한 한국에 둔다.

제5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화장실 시설의 보급 및 개선
2. 화장실 관련 기술 및 세계기술표준 개발·보급
3.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화장실 관련 교육
4. 각 지역 화장실문화 및 시설 실태 조사
5. 화장실 관련 법령제정 지원
6. 홍수 등 세계적 재난 발생 지역에 화장실 설치
7. 물 절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8. 문화·환경·건강을 위한 수준 높은 화장실 보급
9. UN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국제기구 및 NGO와 협력
10. 여성,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화장실 접근
11.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수익사업)

협회는 비영리기관이다. 단,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설립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협회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부, 기타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회장이 정한다. (2016.6.1.개정)



제 2 장 회 원

제8조 (분류 및 투표권)

- ①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협회회원은 각국의 화장실협회로 한다.
 2. 정부회원은 각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3. 단체회원은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화장실 관련 산업체로 한다.
 4. 개인회원은 개인 또는 1,2,3에 소속되어 추천을 받아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2016.6.1.개정)
 5. 학생회원은 관련 학부, 석사, 박사생을 대상으로 하며 1~4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2022.11.08. 신설)
- ②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협회회원, 정부회원, 단체, 개인, 학생 회원 순으로 한다.
(2023.05.23. 개정)

제9조 (가입 및 탈퇴)

- ①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가입의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비 및 분담금)

회원은 8조 회원 구분에 따라 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옵저버)

- ① 국제적인 조직을 가진 정부간·민간단체, 학술기관, 재단, 총회 개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 회원국 협회에서 추천한 단체의 대표자는 옵저버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각국은 필요시 다수의 대표단을 총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옵저버는 총회 의장의 허락을 얻어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제명)

회원이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회원이 일정 기간 활동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연속하여 연락이 두절 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22.11.08. 개정)

제 3 장

회장 및 부회장

제13조 (회장단)

협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4인을 둔다. (2014.02.26개정)

제14조 (직무)

-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선출)

- ①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2023.05.23. 개정)
- ② 부회장 4인중 1인은 선임 부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2014.02.26개정)

제16조 (임기)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14.02.26개정)
- ② 보궐 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투표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정기총회)

- ① 정기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한다. (2022.11.08. 개정)
- ②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8.11.21 개정)

제20조 (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투표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1조 (의장 및 부회장)

-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2022.11.08. 개정)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는 자로, 의장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총회에서 선출된다.
- ③ 회장은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투표권을 가진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총회는 투표권을 가진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3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 구성원,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 차기 회의 개최국 및 시기 결정
3. 총회 결과 보고서
4. 협회의 규약 개정
5. 총회 의장 선출
6.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기타 보조기구 설치
7.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위임하는 사항
8. 기타 회장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9. 협회의 해산

제24조 (경비)

- ① 총회 개최 경비는 협회의 부담으로 하고, 참석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최국은 체재비와 현지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하며, 필요시에 회의 개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2.11.08.개정)
- ② 협회의 부대행사를 별도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구성) ① 이사회의 직위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2. 부회장 4인
3. 선출직 이사 10인 이내
4.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2인, 회장단에서 지명하는 이사 2인 (2014.02.26개정)



제26조 (선출)

선출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2022.11.08.개정)

제27조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 회장단에 의해 지명된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 임기로 한다. (2014.02.26개정)

② 보궐 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 (명예직 및 직무)

① 이사회의 구성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구성원이 협회를 대표하여 활동할 경우 본 협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9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30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 구성원은 1인 1표를 행사하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 업무 추진
 2. 사업계획 및 운영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재산 및 기금관리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7. 총회 결과보고서
 8.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9. 회비 및 분담금
 10.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11. 협회 재단 설립과 운영
 12. 각국 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와 화장실관련 업무 협약 체결
 13. 설립된 감사,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기타 부속기구의 보고사항
 14.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회장의 재량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제32조 (감사)

- ① 협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내부감사 2인과 독립된 외부감사 2인을 두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023.05.23. 개정)
-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연 1회 협회의 재정 상황 감사
 2. 총회, 이사회, 사무국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등
- ③ 감사는 명예직으로 하고, 협회를 대표하여 활동할 경우 본 협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④ 사무총장은 세입·세출현황을 기록한 결산서 및 기타 재정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를 감사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33조 (조직·운영)

-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022.11.08.개정)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협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부설연구소 및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⑥ ⑤항의 연구소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기능)

사무국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수립·집행과 연구·조사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 관리
3.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자료 준비
4. 화장실 관련 교육 및 홍보
5. 화장실 관련 자료 수집
6.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7. 사무국, 연구소 및 위원회의 운영
8. 기금 모금 및 운영
9.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35조 (직원의 급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세우고, 사무국 소재 국가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2022.11.08.개정)

제 7 장 회계 및 경비

제36조 (회계기준)

-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예산 및 회계는 사무국 소재 국가의 통화와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2022.11.08.개정)

제37조 (수익금)

협회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각 회원으로부터의 회비 및 분담금
2. 각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위탁사업 수익금
3. 국제기구, 재단, 기업, 개인의 기부·후원금 및 위탁사업 수익금(2016.6.1.개정)
4. 기타 사업 수익금

제38조 (기부금품)

협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부 및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다.

- ① 기부금품은 제5조 사업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
- ② 기부금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협회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집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2018.11.21.개정)

제39조 (예산)

사무총장은 매년 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예산안 또한 같다.



제 8 장 보 칩

제40조 (규약개정)

협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권을 가진 출석회원의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41조 (규칙제정)

협회의 규약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로고 및 슬로건)

- ① 협회의 로고 및 슬로건은 별첨과 같다.
- ② 이사회는 제3자에 의한 로고와 슬로건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나, 이의 저작권은 협회에 있다.

제43조 (공식 언어)

협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 단, 회의 개최국의 언어는 자국의 부담 하에 통역을 할 수 있다.

제44조 (준용규정)

협회의 규약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국제법과 관례를 준용한다.

제45조 (협회해산)

-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 ② 협회가 해산한 때에는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유치국내 및 타 국가내에 있는 토지·시설물·기타 자산 그리고 고정 자산 증가분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며, 기타 협회 자산은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본 협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국제기구로 귀속하거나 분배할 수 있다.

제46조 (발효일)

협회의 규약은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